붙임 2	경력직 입사지원 시 제출서류

<유의사항>
- 블라인드 **처리** 항목: 나이(생년), 성별, 주소 등 본인의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항목
- 블라인드 **미처리** 항목: 성명, 생월일, 자격명, 자격번호, 취득일, 등록번호

□ 입사지원 시 제출서류(블라인드 처리하여 입사지원 시 업로드)

○ 지원자격 증빙 서류(필수 제출)

구분	제출서류	내용
경력직(연구)	학위 증빙서류	o 학위별 졸업증명서 - 박사학위 소지자: 박사학위 졸업증명서 - 석사학위 소지 후 관련경력 3년 이상인 자: 석사학위 졸업증명서
	경력사항(해당자)	o 석사학위 소지 후 관련경력 3년 이상인 자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- 경력증명서 또는 [별지3]의 경력증명서 수기작성 양식
	학위 논문요약서	o [별지2]의 학위논문 요약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
경력직(일반)	자격사항(해당자)	o 지원자격 충족요건이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인 자 - 지원자격 자격증 사본
	경력사항(해당자)	o 지원자격 충족요건이 관련 경력인 자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- 경력증명서 또는 [별지3]의 경력증명서 수기작성 양식
	학력사항(해당자)	o 지원자격 충족요건이 석사학위 졸업인 자 - 석사학위 졸업증명서
유의사항	o 제출(업로드)된 증명서류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- 낮은 해상도 및 오류(파일손상) 등의 사유로 진위여부가 불가능할 경우 - 증명서류가 미흡(또는 누락)하거나 미제출된 경우 - 진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	

- **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양자가 중복되는(교집합) 기간만 경력으로 인정**
- 경력증명서 관인날인 필수
- 경력증명서에 회사명, 직위(직급), 근무기간, 부서명, 담당업무 등 세부정보가 기재되어야 함 (지원분야 업무 외 경력 미인정)
- 재직 중인 경우 경력기간은 경력증명서 발급일까지 인정하며, 최대 공고일까지 인정
- 입사지원서에 경력사항을 기재하였어도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개라도 미제출한 경우 관련사실 불인정
- 경력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관련 분야 업무기재가 불가능한 경우 '경력증명서 수기작성 양식(별지2)'을 활용하여 내용을 직접 기재하고 해당 기관의 확인(관인날인)을 득하여 제출